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408

발의연월일: 2024. 7. 5.

발 의 자 : 김은혜・유용원・엄태영

최은석 • 조승환 • 서범수

이성권 • 고동진 • 이철규

김소희 • 박대출 • 서명옥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하고 있는데 2019년 개정을 통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제한이 삭제되며 이행강제금이 무제한 부과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해당 건축물을 매입하거나 전세로 입주하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행강제금의 무제한 부과로 이들의 고통을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이 나올때까지 개정안 시행후 3년간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여 기존 건물을 승계 취득한 현행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2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사정 또는 행위가 발생한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100분의 100을 감경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80조의2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		
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	한 특례) ①		
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			
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1의2.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사정 또는		
	행위가 발생한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100분의 100을		
	<u> 감경</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